



노동청 (근로기준감독국)의  
지급판정 임금  
회수하기

From:  
Re:  
If in G2's policy to  
cause accidents to  
happen, worker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ir safety. M  
When inspecting wheelchair p  
1. Perform the task as you  
2. When entering elevators,  
possibility of falling  
3. Perform  
4. Never

# 근로기준 감독국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DLSE) 으로도 일컬어지는

노동청은 가주 산업관계부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산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노동청은 주정부 기관으로서 신고 받은

노동법 위반 사항을 조사 및 감독합니다. 노동청은

최저근로기준에 미달하고 불법적인 조건에서

일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을

준수하는 고용주가 준수치 않는 경쟁업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 지급판정 에 대해 이해하기

노동청이 귀하의 임금 청구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경우, 고용주가 귀하에게 지불해야 하는 액수를 명시한 명령, 결정 또는 지급판정 (“ODA”)을 받게 됩니다. 귀하가 합의를 보기로 동의했지만 고용주가 합의를 어긴 경우에도 ODA가 발송됩니다. 법에 따라 고용주는 10일 이내에 판정액을 지불하거나 명령에 항소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해당 법원에 항소하지 않거나 판정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노동청은 지역 상급 법원에 ODA를 발송하면 이 지급판정은 법적판결문이 됩니다. 이 판결문은 귀하가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법적 방법을 이용하여 고용주로부터 판정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귀하는 또한 판정액을 회수하기 위해 드는 수수료나 기타 비용도 고용주에게 상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통역 서비스 없이 서류를 스스로 작성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귀하는 판결문에 명시된 개인 또는 사업체로부터만 판정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 소유주가 사업체의 빚을 개인 책임에서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적 사업체를 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귀하의 판결문에 이러한 사업체 중 하나가 명시된 경우, “Inc.,” “LLC” 또는 “LLP”가 해당 회사명 뒤에 표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판결문에 지정된 대상이 개인이 아닌 법적 사업체인 경우, 해당 회사 소유주의 자산이 아닌 회사 자산에서만 판정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름이 판결문에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과 판결문에 명시된 회사 (해당되는 경우)로부터 판정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다음과 같은 부속과들을 통해 노동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금 청구판결과 (WAGE CLAIM ADJUDICATION UNIT)** 는 개인별 미지급 임금청구 및 기타 노동법 위반 사건을 심사하고 판결합니다.

**봉제업 임금청구판결과 (GARMENT WAGE CLAIM ADJUDICATION)** 는 “AB633” 으로 알려진 “봉제노동자보호법” 이 적용되는 봉제 노동자들의 임금청구를 심사하고 판결합니다.

**현장단속과 (BUREAU OF FIELD ENFORCEMENT—BOFE)** 는 고용주가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혹은 식사 및 휴식 시간을 여러 노동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합니다. 현장단속과는 고용주가 상해보험, 미성년자 노동, 기록보관, 허가 또는 등록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조사합니다.

**정부공사와 (PUBLIC WORKS)** 는 공공 건축과 관련된 노동법 위반 사건을 조사합니다. “압도하는 직종별 임금”이란 주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대부분의 공공 건설 프로젝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보복수사과 (RETALIATION COMPLAINT INVESTIGATION)** 는 보복고소, 고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보복이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권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이유로 고용주가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노동 시간 혹은 임금을 삭감할 때 발생합니다.

**판결집행과 (JUDGMENT ENFORCEMENT)** 는 노동청이 고용주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후 노동자의 판결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판결액 회수 방법

## 고용주의 자산 조사하기

고용주가 소유한 자산에 대해 정보를 입수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 체불 임금을 회수할 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일 고용주가 개인이 아닌 회사인 경우 해당 회사의 부동산, 금전등록기, 재고, 기계류, 장비 및 은행 계좌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고객으로부터 들어온 수입입니다. 고용주가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의 은행 계좌, 개인 부동산 또는 보석이나 가구 같은 가치 있는 물건을 통해 임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하여 고용주가 회사 또는 개인으로, 아니면 회사와 개인 모두로 등록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판결문에 명시된 개인 또는 회사로부터만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자산 유무를 알아보려면 스스로 정보를 찾아내고 동료들이 알아낸 정보도 얻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에게서 받은 수표에 은행 계좌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카운티 등기사무국을 방문하여 고용주가 소유한 토지를 무료로 검색해 보거나 카운티 재산세 평가 사무국의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판결 선취특권 과 압수 비교하기

자산에 판결 선취특권을 설정하여 판결액을 회수 기간 동안에 매매 또는 양도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압수를 통해 직접 자산을 압류할 것을 보안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능:

- 고용주의 자산에 설정해 귀하가 채무자로부터 판결액을 지불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용주와 구매자에게 통보하는 방식. 대부분의 경우 선취특권이 설정된 자산을 구입하길 꺼려하므로 채무자의 자산 매매가 어려워집니다.

### 선취특권 대상:

- 회사 소유 토지, 건물, 주택, 재고, 장비 및 기계류.
- 개인 소유 토지, 건물, 주택, 보석, 가구, 예술품 및 기타 귀중품.

### 필요한 법원 서류:

- 판결 요약서 (Abstract of Judgment, EJ-001 양식).
- 선취특권 판결통지서 (Notice of Judgment Lien, JLI 양식).
- 판결이행 승인서 (Acknowledgment of Satisfaction of Judgment, EJ-100 양식).
- 소장의 송달서 (Proof of Service, POS-040 양식).

### 기능:

- 고용주의 자산을 압류해 귀하에게 직접 지불합니다.

### 압수 대상:

- 회사 소유 현금, 은행 계좌의 예치금, 고객이 지불한 돈, 임대 수입.
- 개인의 임대 수입 및 임금.

### 필요한 법원 서류:

- 집행명장서 (Writ of Execution, EJ-130 양식).
- 비용 내역서 (Memorandum of Costs, MC-012 양식).
- 판결이행승인서 (Acknowledgment of Satisfaction of Judgment, EJ-100 양식).
- 소장의 송달서 (Proof of Service, POS-040 양식).

## 고용주에게 지불 요청하기

고용주에게 “요구편지”를 보내 체불 액수 지불을 요청하고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적 방법을 통해 회수할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요구편지는 판결액 지급에 사용될 수 있는 고용주의 자산에 고용주가 매매하지 못하도록 판결 선취특권을 설정한 후에 보낼 수 있습니다. 요구편지에는 고용주가 귀하에게 지급해야 할 액수를 요구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다음의 내용도 포함 해야 합니다:

- 귀하가 지급액을 분할금으로 받을 의향이 있는지 여부
- 판결에 의하면 연 10%의 이자가 누적되므로 체불액이 매일 증가할 것이라는 점
- 체불액 회수에 합리적이고 필요한 액수의 비용상환을 고용주에게 요구할 것이라는 점
- 해당 채무 내용이 고용주의 신용 보고서에 기재되어 신용 점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
- 보안관의 재산 압수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고용주에게 더 이상 통지를 보내지 않고 판결액을 회수할 것이라는 점.

## 고용주 자산에 선취특권 설정하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판결문을 받은 경우, 고용주가 부동산 (건물과 땅)을 소유 한 경우,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에 노동청이 귀하를 대신하여 고용주의 부동산에 판결 선취특권을 설정했을 것입니다. **선취특권 인증서 (Certificate of Lien)**가 ODA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용주가 다른 카운티에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해당 카운티에도 판결 선취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만일 고용주가 건물이나 땅을 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귀하가 혼자 고용주의 재고, 기계류, 장비같은 다른 자산을 찾아 판결 선취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판결액을 회수 하기 전에 특히 고용주가 파산 신청이나 자산을 매매 또는 양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주의 부동산과 개인 자산에 선취특권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선취특권 설정에는 2가지 법적 서류가 필요하며 이 서류는 스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판결 선취특권 통지서를 받은 후 또는 해당 자산을 매매하려 할 때 귀하에게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 또는 해당 자산을 구입하려 하는 사람은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귀하에게 판결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선취특권을 무시하는 경우, 보안관에게 자산을 압수하도록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강제 공매를 시행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선취특권은 10년간 효력을 지니며, 귀하가 선취특권을 설정한 카운티 내에 고용주가 소유한 모든 건물과 토지에 설정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에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노동청 측에서 귀하 대신 이 선취특권을 설정했을 것입니다. 이 날짜 이전에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 (<http://www.courts.ca.gov/documents/ej001.pdf>)에 제공되어 있는 “판결 요약서-Abstract of Judgment” (EJ-001 양식)라는 양식을 작성한 후 해당 판결을 귀하에게 발송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 요약서는 법원이 내린 판결을 요약한 공식 법정 문서입니다.
- 고용주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 모든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 사무국에 판결 요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는 카운티 등기 사무국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재고, 장비 및 귀중품과 같은 기타 모든 자산에 대한 선취특권은 5년간 유효하며 해당 주에 위치한 그러한 모든 자산에 적용됩니다. 부동산이 아닌 자산에 선취특권을 신청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에 제공되어 있는 가주 총무처장관실 양식과 설명서를 사용하여 선취특권 판결 통지서 (“Notice of Judgment Lien”)이라 불리는 양식을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 가까운 법원 또는 인터넷 (<http://www.courts.ca.gov/selfhelp-serving.htm>)에 제공된 지침을 참고하여 “소장의 송달”이라 불리는 특수 법적 절차에 따라 고용주에게 이 선취특권판결 통지서 사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 고용주의 채무 면제

판결액 또는 만족할 만한 금액이 지급된 후에는 고용주의 채무를 면제해야 합니다.

- 가까운 법원 또는 인터넷 (<http://www.courts.ca.gov/documents/ej100.pdf>)에서 판결 이행 승인서 “Acknowledgment of Satisfaction of Judgment” (EJ-100 양식)라는 양식을 받아 작성하십시오. 이 양식은 고용주가 더 이상 귀하에게 판결 관련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판결을 귀하에게 우편 발송한 법원을 방문하여 이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에 판결 선취특권을 설정한 경우 판결 이행 승인서 (Acknowledgement of Satisfaction of Judgment)에 공증을 받으십시오.
- “소장의 송달”이라 불리는 특수 법적 절차에 따라 Acknowledgement of Satisfaction of Judgment 사본을 고용주에게 전달하십시오. 소장의 송달은 <http://www.courts.ca.gov/selfhelp-serving.htm>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압수를 통해 보안관이 고용주의 자산을 압류하도록 하기

압수를 할 때, 카운티 보안관의 도움을 받아 고용주의 자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카운티 보안관에게 판결액 회수 조치를 지시하는 법원 문서인 집행영장 (Writ of Execution)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영장은 자산을 압수하여 판결액을 대신 회수해 줄 것을 보안관에게 180일 안에 요청할 권리를 귀하에게 부여합니다. 첫 시도에 판결액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집행영장을 여러 차례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까운 법원과 인터넷 (<http://www.courts.ca.gov/documents/ej130.pdf>)에 제공되어 있는 집행영장서 (Writ of Execution, EJ-130 양식)를 작성하십시오.
- Writ of Execution 제출 시에는 가까운 법원과 인터넷 (<http://www.courts.ca.gov/documents/mc012.pdf>)에 제공되어 있는 비용 내역서-Memorandum of Costs After Judgment (MC-012 양식)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 내역이란 판결액에 대해 발생한 이자와 귀하가 판결액 수령을 위해 지불한 여러 수수료를 요약하여 보여줍니다. 판결액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문서는 이자,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을 상환 받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고용주가 자산을 소유한 모든 카운티에서도 집행 영장 (Writ of Execution)을 받으십시오.
- 보안관에게 수수료를 내고 집행영장 (Writ of Execution) 및 지침을 전달하십시오. 보안관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담당 보안관에게 연락하여 자세한 지침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행영장을 받은지 180일이 지난 후에 보안관에게 압수를 요청하려는 경우, 위에 기재된 절차를 따라 집행영장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자산 에 판결 선취특권을 설정한 후에도 고용주는 판결액 지급을 거부하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제가 받은 판결액인 \$5,000불은 2년이 지난 후 \$1,000불의 이자가 붙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겁이 났지만 친구의 도움으로 고용주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카운티에 위치한 보안관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보안관은 고용주의 자산을 압수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각각 보안관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적힌 목록을 제게 주었습니다. 저는 은행 압류를 요청하여 고용주의 은행 계좌에서 직접 판결액을 받고 싶었지만, 임금명세서 없이 현금으로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고용주의 은행 계좌 정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주말에 많은 돈을 번다는 점이 기억나서, 주말 중 바쁜 시간에 보안관이 고용주의 사업장을 찾아가 모든 판매 수입을 압수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제게 판결문을 보낸 상급 법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법원 서기에게 집행영장 (Writ of Execution)을 요청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비용 내역서 (Memorandum of Costs)를 제출했습니다. 비용 내역서를 통해 제가 부담한 비용과 판결액에 대해 발생한 이자를 법원에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보안관에게 판결액 총액, 비용 및 이자를 회수하도록 명령하는 집행영장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일이 정말 복잡했지만 체불된 \$6,000불을 받고나니 마침내 제가 이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서류 준비하기

판결 선취특권을 설정하려면 판결요약서 (Abstract of Judgment)를 작성해야 하고 보안관이 고용주의 자산을 압수하도록 하려면 집행영장 (Writ of Execution)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 내 다양한 부분을 기재하는 방법이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양식 전문을 읽고 완전히 작성하십시오. 일부 양식은 제출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는 법원 서기 또는 보안관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소 전화**

**법원명 및 주소**  
(귀하에게 판결문을 발송한 법원의 이름 및 주소)  
부서명: 민사  
원고: 귀하  
피고: 고용주

**10. 선취특권 집행**  
a. 판결액  
b. 성명 및 주소

**11. a. 법원 명령 아직 없음**

**성명 주소 전화**

**법원명 및 주소**  
(귀하에게 판결문을 발송한 법원의 이름 및 주소)  
부서명: 민사  
원고: 귀하  
피고: 고용주

**1. 압수가 시행될 것인 카운티**

**11. 판결액**  
**12. 판결 후의 MEMORANDUM 비용 및 수수료**  
**16. 현재까지의 이자**

ABSTRACT OF JUDGMENT [EJ-001 양식]

WRIT OF EXECUTION [EJ-130 양식]

# 지급 판정 임금 회수에 도움이 되는 법률 용어 (명령 결정 혹은 지급판결)

**ODA:** 명령, 결정 또는 지급판정 (“ORDER, DECISION OR AWARD”)에는 체불 임금에 대한 귀하의 청구에 대해 노동청이 내린 명령, 결정과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판정액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고 및 피고:** 법정에서는 보통 체불임금 청구자를 원고, 고용주를 피고로 지칭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법 위반을 법적으로 주장 합니다.

**판결문:**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특정 금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이 기재된 법정 문서이며, 귀하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 경우, 10년 내에 판결액을 회수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10년이 가까워진 시점에도 회수를 하지 못하고 계속 노력 중인 경우 10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판결문을 갱신해야 합니다. 판결액에는 연 10%의 이자가 누적됩니다.

**판결 채권자 및 채무자:** 귀하에게 유리하게 판결된 (ODA)가 발송되고 법원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 귀하가 판결 채권자가 되며 고용주는 판결 채무자가 됩니다. 판결을 집행하는 동안 귀하는 동시에 “원고” 및 “판결 채권자”가 되며 고용주는 “피고” 및 “판결 채무자”가 됩니다.

**판결 집행:** 판결 채무자가 귀하에게 지급해야 하는 판결액을 법적 방법을 사용하여 회수하는 과정.

**판결 선취특권:** 자산 (토지, 건물 및 장비와 같이 가치가 있는 물건 포함) 으로 판결액 지불에 사용될 수 있는 자산을 판결 채무자가 매매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압수:** 귀하가 카운티 보안관을 통하여 고용주로부터 돈 또는 자산을 압수하여 판결액을 대신 회수 할 수 있게 허락합니다. 예를 들어, 보안관으로 하여금 고용주의 자산을 매매 하거나 고용주의 사업체에서 현금을 압수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토지, 주택 또는 건물.

**소장의 송달:** 고용주에게 법적 문서 사본을 전달하는 특수 절차. “소장의 송달”에서 제삼자 (귀하가 아님)는 실질적으로 문서를 고용주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귀하의 고용주에게 문서를 전달하는 사람은 전달 입증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송달”은 이 팸플릿에 설명된 몇몇 법적 회수방법 이용 시 필수입니다. 이에 대한 규칙은 정확하게 지켜야 하며 자세한 지침은 <http://www.courts.ca.gov/selfhelp-serving.htm>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노동청에 판결 맡기기

노동청은 일부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 회수를 돕습니다.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판결의 양도 (Assignment of Judgment) 라는 양식을 받게 되며, 가까운 노동청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양식에 직접 서명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문을 노동청에 맡기는 데 동의하는 경우, 더 이상 판결액을 귀하 스스로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노동청이 귀하의 ODA 판결액 회수를 도울 수 없는 경우 귀하 스스로 회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절차를 설명하는 편지가 발송됩니다.

## 봉제업, 세차업 및 농업 노동자:

봉제업, 세차업 및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특별 배상 자금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자금을 통한 보상 자격이 있는지는 귀하의 청구사건을 담당하는 근로 감독관에게 문의하십시오.

## 요구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임금 체불건을 접수했는데 고용주가 모든 통지를 무시했습니다. 청문회가 열린 후, 저에게 유리한 지급판정을 노동청이 제게 우편으로 발송해 주었고, 상급 법원에서도 최종 판결문을 발송해 주었습니다. 동료들이 자신들도 판결에 승소 했지만, 체불 임금을 회수하려 하자 고용주가 돈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카운티 등기 사무국을 찾아가니 이 회사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장비나 재고가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편지를 쓰면 회사가 장비를 팔아 임금을 절대 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당 장비에 대해 판결 선취특권을 신청했습니다. 판결 선취특권 통지서 (“JL1”) 이라는 양식을 인터넷에서 받아 양식에 있는 지침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소장의 송달”이라는 특수 법적 절차에 따라 JL1 사본을 고용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고용주에게 판결액 지급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용주가 장비를 팔려고 하자, 제가 걸어 놓은 판결 선취특권을 구매자가 보고는 제가 임금을 받고 판결 선취특권을 풀기 전까지는 장비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 기억해야 할 것들

- 정리를 잘 해 두십시오. 모든 문서를 한 곳에 모아 두고, 판결액을 회수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를 기록해 두십시오.
- 모든 법원 양식에 대한 지침을 따르고 모든 양식은 제출 전에 복사본을 만들어 두십시오.
- 모든 양식에서, 귀하는 항상 “판결 채권자” 및 “원고”이고 고용주는 “판결 채무자” 및 “피고”입니다.
- 법원 양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 서기에게 문의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십시오.
- 방문 또는 연락해야 하는 공관 및 법원의 주소를 모두 알아내십시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귀하에게 판결문을 발송한 법원의 이름 및 주소. (해당 법원 부서는 언제나 “민사”)
  - 고용주가 부동산을 소유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 사무국 (고용주의 부동산을 찾고 선취특권을 설정하기 위해)
  - 거주 국무장관실 (고용주의 개인 자산에 대해 선취특권을 설정하기 위해)
  - 고용주가 사업을 하는 카운티의 보안관 사무실 (압수를 통해 보안관이 고용주의 자산을 압류하도록 하기 위해)
- 법적 문서 복사본을 고용주에게 전달하기 위한 특수 법적 절차를 따르십시오.

다음 양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는 법원 서기 또는 보안관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 판결 요약서 (Abstract of Judgment, EJ-001 양식)
- 집행영장서 (Writ of Execution, EJ-130 양식)
- 선취특권 판결통지서 (Notice of Judgment Lien, JLI 양식)
- 판결이행 승인서 (Acknowledgment of Satisfaction of Judgment, EJ-100 양식)
- 비용 내역서 (Memorandum of Costs, MC-012 양식)
- 소장의 송달서 (Proof of Service, POS-040 양식)

# 자주 묻는 질문들

## 1. 고용주가 파산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주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통지를 받게 되면, 더 이상 선취특권 판결 설정 또는 압수를 통해 판결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고용주의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판결액 회수에 대한 파산 법원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귀하의 판결액을 고용주의 채무 중 하나로 기재한 파산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이 문서를 자세히 읽고, 설명과 기한을 따르십시오. 이미 선취특권 판결을 설정한 경우에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배분되는 수익금으로 판결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파산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청구 증명서 (“**proof of claim**”) 양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산 절차를 통해 판결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파산 법원을 통한 판결액 회수에 더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2. 판결액 회수에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거주 지역의 비영리 법률자문 제공자와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수금 처리 대행사를 고용해 판결액 회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채권자 법 또는 상업 채무 수금 관련 경력이 있는 유명 변호사 (“채권자 권리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